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41-4319호

시행일자 2024. 7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(2024. 7. 10.)

3. 상기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,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주요내용

-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함

○ 시행일 : 2024. 7. 10.

#붙임자료 :

- 1) 개정문 1부.
- 2) 신규조문대비표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 수신처: 각 시도 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